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116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redacted] 유한회사
	2. [redacted]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구합10055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2014. 10. 29.자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2014. 10. 28.자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및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변경되었다.

가.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2013. 6. 27.자 취득세 등의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2013. 6. 26.자 취득세 등의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시장이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이하 '원고 [redacted]아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① 2013. 6. 27.자 취득세 본세 50,581,800원, 지방교육세 본세 5,058,18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2,52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4. 10. 29.자 신고불성실가산세 11,127,9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725,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이하 '원고 [redacted]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① 2013. 6. 26.자 취득세 본세 40,000,000원, 지방교육세 본세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4. 10. 28.자 신고불성실가산세 8,4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0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 [redacted]아이는 피고 [redacted]시장의 2013. 6. 27.자, 원고 [redacted]에이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2013. 6. 26.자 각 취득세 등의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가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종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의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10. 29. 원고 [redacted]아이에게,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4. 10. 28. 원고 [redacted]에이에게 다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부분은 종전 부과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피고 [redacted]시장의 2014. 10. 29.자,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2014. 10. 28.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단순 병합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redacted]아이는 2010. 12. 3., 원고 [redacted]에이는 2010. 3. 10. 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원고 [redacted]아이에 대한 피고 [redacted]시장의 처분

1) 원고 [redacted]아이는 [redacted]은행으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리 [redacted]외 4필지 토지 및 [redacted]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2) 원고 [redacted]아이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1. 11. 1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1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3) 원고 [redacted]아이는 피고 [redacted]시장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 [redacted]시장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 원고 [redacted]아이가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1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6. 27. 원고 [redacted]아이에 대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68,285,430원(= 본세 50,581,800원 + 가산세 17,703,630원), 지방교육세 6,322,710원(= 본세 5,058,180원 + 가산세 1,264,530원), 농어촌특별세 3,414,260원(= 본세 2,529,090원 + 가산세 885,1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 [redacted]에이에 대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처분

1) 원고 [redacted]에이는 2010. 3. 30. [redacted]은행으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2) 원고 [redacted]에이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2. 6. 11.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8. 9.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이 사건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 [redacted]에이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위 나.의 4)항과 같은 이유로 신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 원고 [redacted]에이가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2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6. 26. 원고 [redacted]에이에 대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51,132,000원(= 본세 40,000,000원 + 가산세 11,132,000원), 지방교육세 4,713,200원(= 본세 4,000,000원 + 가산세 713,200원), 농어촌특별세 2,156,600원(= 본세 2,000,000원 + 가산세 156,6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조세심판절차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9. 모두 기각되었다.

마. 가산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부과처분

1) 피고 [redacted]시장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28. 원고 [redacted]아이에 대한 2013. 6. 27.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가산세 19,853,330원(= 취득세분 17,703,630원 + 지방교육세분 1,264,530원 + 농어촌특별세분 885,17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4. 10. 29. 가산세의 종류별로 산출근거와 내역을 명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1,127,980원(= 취득세분 10,116,360원 + 지방교육세분 505,810원 + 농어촌특별세분 505,8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725,350원(= 취득세분 7,587,270원 + 지방교육세분 758,720원 + 농어촌특별세분 379,360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2)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28. 원고 [redacted]에 이에 대한 2013. 6. 2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가산세 12,001,800원(= 취득세분 11,132,000원 + 지방교육세분 713,200원 + 농어촌특별세분 156,60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가산세의 종류별로 산출근거와 내역을 명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8,400,000원(= 취득세분 8,000,000원 + 지방교육세분 4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01,800원(= 취득세분 3,132,000원 + 지방교육세분 313,200원 + 농어촌특별세분 156,600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2013. 6. 27.자 및 2013. 6. 26.자 각 취득세 등의 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본세 처분'이라 하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2014. 10. 29.자 및 2014. 10. 28.자 각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이라 하며,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 11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신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선행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그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은 구법상 세제혜택을 신뢰하여 신법 시행 전인 2010. 3. 29. 및 2010. 12. 22.경 각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을 승인받아 자산보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발행대금으로 자산보유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투자자도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투자하는 등 신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선행행위가 존재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④ 자산유동화계획 수립 당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매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채권회수액을 미리 산정하는 등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위와 같은 채권회수방법을 묵시적으로 예정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있다.

2) 두 번째 주장

설령 신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납세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세 번째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세액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신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부칙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신법 시행 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구체적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그 당시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① 당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회수기법(유입)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매수신고인이 없어 최저매각대금의 하락 및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고, 유동화계획 단계에서 위와 같은 유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들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은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원고들과 투자자들이 유동화자산의 양수대금 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이자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투자자들이 취득세 감면조항을 고려하여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들과 투자자들이 신법 시행 전에 구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감면요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신법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이나 정부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이 신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10. 28. 원고 [redacted]아이에 대한 2013. 6. 27.자 취득세 등의 본세 및 가산세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14. 10. 29. 위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액산출 및 과세근거, 가산세 종류(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특정한 뒤 제1. 마. 1)항 기재와 같이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4. 10. 28. 원고 [redacted]에이에 대한 2013. 6. 26.자 취득세 등의 본세 및 가산세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14. 10. 28. 위 원고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물건, 과세표준, 가산세 종류, 금액, 산출근거 등을 특정한 뒤 제1. 마. 2)항 기재와 같이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인정근거] 을가 제8 내지 11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redacted]시장의 원고 [redacted]아이에 대한 2014. 10. 29.자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원고 [redacted]에이에 대한 2014. 10. 28.자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등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종류 등을 제대로 기재하여 부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 및 감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본세 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 변경 및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재판장 판사 이승훈

판사 김진선

판사 장민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관계 법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6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상 -